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52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염태영·최혁진·박용갑
정준호·손명수·이연희
윤후덕·김우영·이해식
김준혁·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할 과제이나, 정부는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범정부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마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 한다)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정책 보고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중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u>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제8조의2(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마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 <u>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 한다)의 이행현황을</u>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정책 보고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 ----- ----- -----<u>연도별감축목표의 이</u> <u>행현황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u> <u>이행현황</u>-----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⑦ (생략)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략)	----- -----. <u>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 ① ----- ----- ----- -----. <u>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